하위 20%·26명에 이름 올릴까 전전긍긍

새정치 평가위 첫 회의…조은 "외부 개입 차단 공정 평가"

깜깜이 평가에 불만 표출…의총 소집 논란 재연 가능성도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의 '목숨줄'을 좌우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물갈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평가위원 인선 결과에 대해 지도부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각종 루머가 확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당연히 외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오직 평가위의 기준과 방법으로만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의 누구도 위원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어떤 정파나 정치적 셈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며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 치의 의심 없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위는 60년 당 역사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당의 결정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의 외부인사로 이뤄진 평가위의 평가 작업에 따라 전체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평가위원 인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첫 회의가 잡혔다는 점 등을 놓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일부 최고위원은 시민단체, 교수 출신 편중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원 가운데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막판에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교체되기도 했다.

모 최고위원은 "정치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배제된 적이 있다"며 "시민단체 및 교수 출신 평가위원들이 그들만의 도식적인 평가에 나서지 않을 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위 출범으로 현역 물갈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서 교과서 정국 한가운데서 내부 분란이 다시 촉발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평가위원 전원이 외부인사로 면면이 생소한 터라 '깜깜이 평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의원들의 불안감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평가위 출범에 따라 개최 여부가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오픈 프라이머리 의원총회' 소집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소속 국회의원 79명이 서명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가위 활동 등 전반적인 공천 프로세스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가위 인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 등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1차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아베 총리 내달 2일 서울서 첫 회담

위안부 문제 최대 쟁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3년 만에 재개한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 하에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5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4가지 해법 제시

박주선 무소속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8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 "대선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은 오간 데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나라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며 4가지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하는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경자 화백 금관문화훈장 추서 촉구

김승남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흥 출신인 천경자 화백은 남성 중심의 미술계에 혁명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며 "천 화백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금관문화훈장 추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천 화백이 '꽃과 여인을 사랑한 화가'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화가로서 미술계에 기여한 평생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가족 및 국립현대미술관과의 불화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대표 여류작가로서 한국 미술사에 독보적인 존재인 만큼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중국산 김치 유통·관리 '김치산업진흥법' 발의

황주홍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를 중국이 차지함에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수입됨에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장로4가 고운라피네" 입주자 모집공고(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택과 -12808호(2015. 10. 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34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264.40㎡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20층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총 1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공급면적 및 공급대상

(단위:㎡)

타입(㎡)	공급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급면적	주거공용	소 계			
A -TYPE	148세대	49.8310	19.5586	69.3896	10.8617	80.2513	13.0651

1. 상기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선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세대별 중심치수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등기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

(단위:천원)

구 분	보증번호	층 별	공급세대	분양가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 도 금					잔금 30%
					대지가격	건물가격	계	계약시	2015.12.02	1차 12% 2016.03.02	2차 12% 2016.07.06	3차 12% 2016.11.02	4차 12% 2017.03.02	5차 12% 2017.07.05	입주 지정일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제012920 15-104-0 003800호	18~20층	24	188,000	25,842	162,158	188,000	9,400	9,400	22,560	22,560	22,560	22,560	22,560	56,400
		4~17층	112	184,000	25,842	158,158	184,000	9,200	9,200	22,080	22,080	22,080	22,080	22,080	55,200
		2~3층	12	180,000	25,842	154,158	180,000	9,000	9,000	21,600	21,600	21,600	21,600	21,600	54,000

■ 공통사항
1. 계약금 분납은 2015년 12월 2일 이후 계약한 세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15년 12월 2일 이후 계약시에는 계약금 10%를 일시납부 하셔야 합니다.
2. 상기 분양대상 148세대는 단일(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가격입니다.
4. 상기 (실계상)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MDF/방재실, 관리/경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분양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5. 전체(상가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상가 및 도시형생활주택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또는 증감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7.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 상기 분양금액은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임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세대별 층별, 향별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10.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11.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12.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상기 분양대상 148세대는 발코니가 확장되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료입니다.

■ 청약신청자격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00)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충장로4가 고운라피네"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청약제한, 재당첨제한, 청약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및 청약일정

구 분	적 요
청약기간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1월 02일(월) (10:00 ~14:00) · 접수장소 :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5-4번지 ☎ 062-225-0030)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100만원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금융기관: 광주은행 / 예금주: (주)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계좌번호: 220-107-355117) · 무통장 입금후 청약시간내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당첨자발표 및 동호수추첨	· 2015년 11월 02일(월) 15:00 당사 견본주택(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5-4번지 ☎ 062-225-0030) · 동호수 결정 방법 : 당사 견본주택에서 추첨에 의해 층, 호수를 결정함
청약금 환불	· 당첨자 및 낙첨자 일괄환불 예정(당첨자 발표일 이후부터 환불기간내 계좌로 자동 이체) 단, 환불시 기간 이자는 발생치 않음
청약금 환불 기간	· 당첨자발표일 이후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평일에 한하여 환불예정(환불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 환불시 필요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청약신청접수증(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상기 구비사항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시 사용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임대사업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서명도 가능)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무통장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 인 (중도금대출 불가)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무통장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2.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대화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은 하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3.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일시 : 2015년 11월 02일(월) (16:00~17:00) 단, 청약자가 없을 경우, 바로 선착순계약 진행예정.
2.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5-4번지 ☎ 062-225-0030)

■ 선착순 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일시 : 2015년 11월 02일(월) 17:00 이후부터 선착순 계약가능. 단, 청약신청자가 없을 경우, 2015년 11월 02일(월) 15:00 이후부터 선착순 계약가능함.
2.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5-4번지 ☎ 062-225-003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광주은행	220-107 -355117	(주)경인개발전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입금시 비고란에 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예 : 111호 홍길동의 경우 → 111홍길동 ·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에 상기의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2.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받을 수 없음.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3.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4. 당첨된 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됨.
2. 주민등록증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함.
3.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5.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분할하여 납부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6. 청약 및 본 계약체결 이후, 시공상의 여건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인허가 변경과정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모든 업무절차를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및 위임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시 동내용에 대한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체의 허가변경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 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임대사업자 포함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분양계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본인 또는 배우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분양계약용)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분양계약금(무통장입금) ·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분양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인장
법 인 (중도금대출 불가)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분양계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분양계약금(무통장입금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융자) 조건 등
1. 시행자인 (주)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의 1회에서 5회(총분양대금의 60%)차까지 중도금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는 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대출조건은 계약자중 금융기관 대출자격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하며, 계약자 본인의 대출가능조건에 따라 상기의 대출기능 금액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함. (대출 불가시에는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함)
3. 본 사업의 중도금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완료일까지 시행자가 대납하며, 금리등의 기타조건은 대출취급 은행의 대출조건에 따라야함.
4. 대출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 제비용등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함.
5. 중도금대출은 원칙적으로, 개인만 가능하며 1인당 1세대 대출만 가능함. 단, 2건이상의 계약자는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 취급여부를 결정한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1. 2017년 11월 예정(준공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함)
2.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1.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2. 사전점검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유의사항
1. 본 건축물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건축물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3.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4. 계약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당하거나 (해제시 위약금 부담)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함.
5. 규모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로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면적(㎡) X 0.3025
6.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7. 본 건물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8.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내용 및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9.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또는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관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건축물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11.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동안 공개 후 관련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12.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13.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 당 사업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15. 건축물의 외관, 야간조명, 옥상, 조형구조물은 승인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수정될 수 있음.
16. 주변 건물 및 시설 및 세대별 배치, 구조, 향과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환경권(소음, 진동, 불빛)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7. 기계식주차타워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8. 집합건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9. 본 건물은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10항에 따라 해당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와 제9조의 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내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함.
21.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이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이 표시된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지하철, 학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22.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공급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추후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3. 본 건축물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24.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25.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2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27. 보증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조세 등 기타 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은 책임지지 아니함.
28.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일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만약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29.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립하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시설물의 각 실 위치, 용도, 기구, 수량 내부시설물은 본 공사시 사업주체의 계획에 의거 시공 및 설치 예정임.
30. 일부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31.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2. 호실 내의 전시 조명등, TV, 식탁, 테이블, 소파, 커튼, 액자 등의 모든 소품은 전시용임.
33.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에 설치된 선홀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34. 단지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35.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36. 견본주택 및 각종 분양제작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별도계약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 및 제작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37.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포함)까지	₩ 19,096,000,000 일금 일백구십억구천육백만원정	제01292015-104 -00038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공동주택)**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4.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일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